

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(문화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1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2.
발 의 자 : 문화성, 강혜순, 안영호,
홍영진, 김도운, 정재환,
문기호, 박경흠, 김태욱

1. 제정이유

중구 내 공공건축물, 공중이용시설 등에 점자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,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 중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며,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나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다.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,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라. 점자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마.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및 한글 점자의 날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1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관계법령: 「점자법」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, 제12조의2, 제15조, 제16조

5. 참고사항

- 가. 조례안 예고: 2025. 4. 18. ~ 4. 24.(6일간) / 의견없음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「점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다.

1. “공공건축물”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.
2. “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”이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)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

4 (제273회-행정자치위제2차부록)

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·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, 점자에 대한 인식,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7조(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)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·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점자의 보급과 지원) ① 구청장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,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, 시각장애인이 대피 방법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문 및 책자를 제작·제공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·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도서관법」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
3.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

제9조(점자문화의 확산)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, 지역신문,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제10조(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) 구청장은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
2. 점자교육
3.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
4.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한글 점자의 날)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

6 (제273회-행정자치위제2차부록)

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1】

관 련 법 령

□ 점자법

제4조(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)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,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

② 공공기관등은 입법·사법·행정·교육·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삭제

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·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

제7조(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
2.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8 (제273회-행정자치위제2차부록)

3.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
4.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
5.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
6.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
7.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
8.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
9.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2조의2(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)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(전자점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5조(한글 점자의 날)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

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,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6조(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은 조례 개정 내용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3. 작성자

- 소 속: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관광과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성 명: 한주현
- 연 락 처: (052)290-3565

의안 번호	2412	【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5. 2.(금) 문희성 의원 외 8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5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5. 16.(금)

2. 제안이유

- 중구 내 공공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, 중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(안 제3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(안 제7조)
- 점자의 보급과 지원(안 제8조)
- 점자문화의 확산(안 제9조)
-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(안 제10조)
- 한글 점자의 날(안 제11조)